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456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27190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012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나304562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피고, 피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빛

담당변호사 권민지, 이용호, 박민정

변론 종결2022. 4. 20.

판결 선고2022. 6. 17.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1149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식회사 B와 E 사이에 영주시 F 전 843m²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45,634,8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634,867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E 사이에 영주시 F 전 84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항소취지도 위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2011. 9. 23.에 1억 원, 2012. 1. 20.에 9,570만 원, 2012. 12. 14.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고, B은 2014. 8. 30. 원고에게 '6억 원을 2014.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B은 2015. 7. 2. E에게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은 2015. 7. 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0.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11.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6.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카단10060호)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결정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E을 상대로도 B과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E에 대한 주소를 보정하지 않아 2016. 11. 9. 원고의 E에 대한 소장은 각하되었고, 위 소장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1. 18.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H, 채권최고액 36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4. 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날 G 명의로, 2014. 7. 11.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날 B 명의로, 2015. 7. 23.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2015. 7. 24. E 명의로 각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차례로 이전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11. 30.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익자인 E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E를 상대로 E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장이 각하된 후 제소기간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 대하여만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채무자의 법률행위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채권자가 전득자만을 취소소송의 피고로 삼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채권자가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거나 채권자가 전득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전제로 먼저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6억 원의 대여금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고(원고는 그 중 일부로 1억 원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반환 채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B에 대한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는 분리 확정되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룰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채무자 B의 무자력 여부 가) 적극재산

제1심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과세정보, 토지소유현황),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토지소유현황, 부동산거래내역)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7. 2. 당시 B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은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제1심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인 2015. 7.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359,1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극재산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7. 2. 당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 6억 원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 외에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7,700,280원, 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 313,483,133원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B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은 합계 921,183,413원(= 6억 원 + 7,700,280원 + 313,483,133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B이 부담하고 있던 소극재산액이 적극재산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사해의사의 추정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같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 역시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전득자인 피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4) 소결론 결국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E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앞서 본 B에 대한 대여금반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득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과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조합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 피보전채권액

원고가 B에 대한 대여금 반환 채권 중 일부인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동담보가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5. 7. 2.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313,483,133원인 사실, 그 무렵인 2015. 7.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은 359,118,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평가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에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5,634,867원(= 359,118,000원 - 313,483,133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액과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45,634,867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동담보가액인 45,634,867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45,634,867원 및 이에 대한 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김태천

판사김민지

판사박소영